분당중앙교회 운영정관

전 문 (Preamble)

우리는 우리의 신앙원리들을 보존하고 견고하게 하며, 우리의 공동체를 질서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 공포한다. 이 규약은 교인 각자의 자유와 본 교회와 타교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이다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명칭) 본 교회는 성경에 근거한 장로회의 정체(正體)와 그 원리로 한 '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'(이하 '본 교회')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과 비전) ①본 교회는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정확무오한 신구약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(합동)헌법 (이하 '장로회헌법')에 의한 신앙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, 교육과 봉사,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.
 - ②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 교회는 다음 3가지의 비전을 설정한다.
 - 1.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
 - 2. 인물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
 - 3.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교회
- 제3조(위치) 본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39에 주소지를 둔다.

- 제4조(소속과 신앙지도의 원칙) ①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(합동) 평양제일노회에 소속된다.
 - ②본 교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장로회헌법을 본 교회의 자치규범과 신앙원리로 삼으며, 본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 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장로회헌법에 구속된다.
 - ③본 교회는 장로회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원리를 존중하며 강도와 치리를 겸한 목사와 치리를 하는 장로를 세워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명령을 준행하며 온전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- 제5조(범위) ①본 교회의 정관을 규정함은 제2조 목적과 비전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회의 성결과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발전과 목회유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. 본 교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- 1.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
 - 2. 기독교 교육 및 장학과 관련된 사업
 - 3. 구제와 관련된 사업
 - 4. 사회복지사업
 - 5. 의료사업
 - 6. 인류애 실천과 관련된 사업
 - 7.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
 - 8. 기타 정관상의 목적과 비전 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 - ②본 교회는 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서 별도의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으며, 법인의 출연재산 은 공동의회 인준을 받는다.
- 제6조(조직) 본 교회는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와 집행기관인 제직회,

치리회인 당회를 두고 각 의회(議會)와 치리회(治理會)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당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.

제 2 장 교인

- 제7조(교인의 구분과 범위) 본 교회 교인의 구분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.
 - 1. 원입교인: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참석 과 믿음,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.
 - 2. 학습교인: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만 14세 이상이 된 교인으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.
 - 3. 세례교인: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이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이다.
 - 4. 유아세례교인: 만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.
 - 5. 입교인: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을 거치고 입교식을 행한 후 입교인으로 공포되면 입교인이 된다.
 - 6. 본 정관에서 교인이라 함은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는 입교인과 세례교인을 의미하며,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. 단, 본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 의결권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은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.
- 제8조(입회) 본 교회 교인의 입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한다.
- 제9조(교인에 대한 정관의 효력) 본 교회의 정관은 이를 제정할 당시의 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적용되어 법적 효력이 미친다.

- 제10조(재산권의 보장과 제한) ①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재산권이 보장된다.
 - ②교인은 정관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·수익한다.
 - ③본 교회의 정관에 따라 시벌(施罰)하에 있는 교인은 재산권 행사가 보류된다.
 - ④교인제적 및 제명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와 재산권을 상실하다.
- 제11조(교인의 의무) ①본 교회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회와 기도 회와 집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, 당회가 허락하지 않은 예배시 간과 예배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, 기도회 및 집회는 불법행위로 가주하다.
 - ②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.
 - ③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및 헌금할 의무를 진다.
 - ④교인은 장로회헌법과 본 교회 정관에 따른 신조와 신앙고백과 정치원리, 권징조례, 각종 규정들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준행 (遵行)하며 이를 어길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12조(교인의 권리 및 제한) 본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 게 있다.
 - 1.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.
 - 2. 본 교회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 - 3. 교인은 본 교회 정관과 장로회헌법에 따라 교회(당회)와 교회 상급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다.

- 4. 세례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.
- 5.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교인의 권리가 중지된다. 단, 권리중지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.
- 6. 교인의 권리는 교인의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,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권리가 상실된다.
- 7. 모든 교인은 성경과 본 교회 정관을 준행하고 치리에 복종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 다.
- 8.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, 제명 및 출교 처분를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.
- 9.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.
- 제13조(퇴회) 본 교회 교인의 퇴회는 당회의 결의로 확정하며,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별명부로 관리한다.

제 3 장 교회의 직원

- 제14조(항존직) ①본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위임(담임)목사와 시무장 로와 시무(안수)집사로 한다.
 - 1. 위임목사: 본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로 교회를 대표하고 설교, 심방, 인사, 재정 및 모든 교회 직무와 사역을 총괄적으로 지도 감독하며 당회장이 된다. 본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후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원로목사를 결정하여 소속노회에 청원하면,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가 된다.
 - 2. 시무장로: 교인의 대표자로 위임목사의 목회활동을 협력하여

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며, 당회원이 된다. 본 교회에서 연속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에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원로장로로 추대할 수 있 다.

- 3. 시무집사: 교인들의 택함을 받고 목사에게 안수 임직을 받는 무흠 남자교인으로 목사와 장로의 지도를 받아 관련 봉사직무 를 수행한다. 시무집사가 은퇴할 경우 명예집사가 된다.
- ②본 교회 항존직의 시무연한은 만70세로 하며, 시무연한 변경은 소속교단의 결의에 따른다.
- ③시무장로와 시무집사는 7년에 1차씩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 결수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
제15조(임시직) 교회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(設置)하며, 단 본 교회의 모든 임시직의 임기는 만70세까지로 한다.

- 1. 전도사: 본 교회의 소속노회에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당회 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에 의한 유급교역자로 위임(담임)목사 의 시무를 보좌한다.
- 2. 권사: 당회의 지도아래 교인을 방문하되, 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교인과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아 권면하며 제직회 회원이 된다. 권사가 은퇴할 경우 은퇴권사가 된다.
- 3. 서리집사: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하며 그 임기는 1년이다. 단, 만70세 정년 직전에 서리집사로 임명된 교인은 만70세 후에는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없으며 은퇴집사로 부른다.

제16조(준직원) ①본 교회의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준직원이다.

1. 강도사: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 계속 시무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 결의에 의하며 위임(담임)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.

- 2. 목사후보생: 본 교회 소속 노회로부터 자격심사를 받아 본 교 단 소속 신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로서 당회장의 천거 와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고, 계속 시무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 회의 결의를 요하며 위임목사를 보좌한다.
- ②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당회 관리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아래 있다.

제 4 장 선거 및 임직

- 제17조(선거원칙) ①본 교회의 선거권은 무흠 입교인(세례교인)에게 주어진다. 단, 선거권은 만18세 이상에 주어진다.
 - ②투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 한 경우는 당회장이 방법을 정할 수 있다.
- 제18조(선거운동) 본 교회에서나 어떤 회(會)에서든지 투표하는 일에 대하여 사회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선시키고 자 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돌리거나, 방문 권유하거나, 문서 로나 집회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일을 금한다.
- 제19조(공고) 본 교회 당회는 교회의 선거일 1주 전에 교회주보나 홈 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.
- 제20조(선거사무) 본 교회의 선거사무에 필요한 수거위원 및 개표위원, 감찰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은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.
- 제21조(선거공보) 본 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유인물로 배포하거나 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- 제22조(선거 및 임직) ①본 교회 위임(담임)목사의 청빙, 선거 및 위임식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.
 - 1. 자격: 본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와 목사임직을 받은 본 교단 소속 목사로 한다.
 - 2. 후보자선정: 본 교회 위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가 '청빙청원위원회'가 되어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.
 - 3. 선거: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에서 임시당회장이 "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"이라고 선언한 후 즉시 투표한다.
 - 4. 청빙준비: 당회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당회의 결의로 소집 한 공동의회에서 가부의 투표를 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노회에 청빙을 청원한다.
 - 5. 청빙서식: 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당회원 연명으로 청빙서식을 갖추되, 그 내용은 "분당중앙교회 교인들은 귀하께서 목사의 재덕과 능력을 구비하여 우리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주실 줄로 확신하여 귀하를 본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하오며 겸하여 귀하께서 담임 시무기간중에는 본 교인들이 모든 일에 편의와 위로를 도모하며 주 안에서 순복하고 주택과 매월 생활비를 드리기로 서약하는 동시에 이를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하여 청원하오니 허락하심을 바라나이다"라고 한다. 그 밖의 청빙과 관련한 사항은 장로회헌법에 준한다.
 - 6. 위임예식: 위임목사의 서약, 교인의 서약, 공포 등 위임예식의 절차는 장로회헌법에 준한다.
 - 7. 사면 및 사직: 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목사의 사면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.
 - ②본 교회 시무장로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.
 - 1. 자격: 만 35세 이상 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, 디모데전서 3:1-7에

해당하는 자로서 한다.

- 2. 선거방법: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 자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 단, 당회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.
- 3. 임직승낙: 시무장로를 선거하여 노회가 고시 승인하고 선거된 본인도 승낙한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.
- 4. 임직순서: 교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위임목사가 강도(講道)한 후 장로 서약 등 임직순서에 따른 사항은 장로 회헌법에 준한다.
- 5. 휴직 및 사직: 본 교회 시무장로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 에 따른다.
- 6. 본 교회는 당회 결의로 협동장로를 선임할 수 있으며, 이명 후 2년이 경과하면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장로로 추천 할 수 있다.
- ③본 교회 시무집사의 선거 및 임직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.
 - 1. 자격: 만 35세 이상된 남자교인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, 디모데전서 3:8-13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다.
 - 2. 선거방법: 공동의회에서 선거하되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 - 3. 임직승낙: 시무집사를 선거하여 본인의 승낙 후에 본 교회 당회가 임직한다.
 - 4. 임직순서: 교회가 정한 날짜와 장소에 모여 개회하고 위임목사 가 강도한 후 집사서약 등 임직순서에 따른 사항은 장로회헌법 에 준한다.
 - 5. 휴직 및 사직: 본 교회 시무집사의 휴직 및 사직은 장로회헌법 의 규정에 따른다.
 - 6. 무임집사: 이명 무임집사 중 2년이 경과하면 본 교회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집사로 추천할 수 있다.

7. 서리집사: 위임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를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당회의 결의로 제직회 회원이 될 수 있다.

④본 교회 권사의 선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며, 그 밖의 경우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임명한다.

- 1. 시무권사: 여자 교인 중에서 만45세 이상 된 무흠 입교인으로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교인으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자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.
- 2. 명예권사: 다년간 교회에 봉사한 여자 교인 중에 60세 이상 된 입교인으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할 수 있으며, 만70세 정년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.
- 3. 그 밖의 무임권사 중 당회 결의로 협동권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2년 경과 후 본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무권사로 추천할 수 있다.

제23조(임직자교육) 본 교회에서 시무장로, 시무(안수)집사, 시무권사로 피택된 자는 임직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한다.

- 1.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장로회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, 그 교육은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시 행한다.
- 2.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본인이 스스로 거절할 경우 당회 결의로 임직식을 1년 유보하거나 취 소할 수 있다.

제 5 장 공동의회

제24조(성격)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공동의회를 둔다.

제25조(조직) ①본 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(당회장)가 공동의회 의

장이 되며, 공동의회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한다.

- ②담임목사가 없는 경우(허위교회)에는 본 교회가 소속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당회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6조(회원) ①본 교회 공동의회 회원은 만18세 이상의 무흠 입교인 (세례교인)으로 한다. 흠이라 함은 사법치리와 행정치리를 받는 자를 의미한다.
 - ②기간을 정하지 않고 치리를 받은 자는 치리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동의회의 회원권이 보류된다.
 - ③공동의회 회원자격은 본 교회 교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로 한다.
- 제27조(소집청원) ①본 교회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의 결의 로 당회장이 소집한다.
 - 1.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
 - 2. 제직회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
 - 3. 회원 3분의 1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
 - 4. 상회(노회, 총회)의 지시가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
 - ②공동의회 소집은 당회의 권한으로 소집청원자는 당회의 결의에 순종하며,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제28조(회집) 당회는 공동의회를 개최할 날짜 및 장소와 의안을 1주전에 본 교회게시판이나 주보,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. 단,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특별한 경우의 판단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.
- 제29조(회의) ①본 교회 공동의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.
 - 1. 정기공동의회: 정기공동의회는 1년 동안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 으며, 제직회와 부속기관의 보고와 당해연도 교회예산결산 보

- 고, 차기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며 그 밖의 정관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고된 안건만 다룬다. 본 교회의 정기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.
- 2. 임시공동의회: 공동의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당회가 그 안건을 명시하여 1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며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.
- ②특별한 일로 인하여 연말 정기공동의회를 소집하지 못했을 경우, 당해연도 결산승인은 차기연도 정기공동의회에서 병합 처리하되 예 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.
- 제30조(의결사항) ①본 교회 공동의회가 처리할 안건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의 확정
 - 2. 감사보고서의 승인
 - 3. 교회운영정관의 제정 및 개정
 - 4. 교회소속교단 및 노회 탈퇴, 노회소속 변경, 행정보류
 - 5. 당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
 - 6. 상회가 공동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제시한 안건
 - 7. 위임(담임)목사의 청빙청원에 관한 사항 및 투표
 - 8. 시무장로, 시무집사 및 권사의 선거
 - 9. 재정장부 공개 및 열람 승인
 - 10. 기타
 - ②원로목사, 위임(담임)목사, 장로, 집사, 권사의 해임이나 징계는 공동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.
- 제31조(의사정족수) 본 교회 공동의회는 그 작정된 시간에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,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의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 단, 서면으로 결의권을 공동의회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, 서면위임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.

- 제32조(의결정족수) 본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- 1. 위임(담임)목사 청빙청원투표와 시무장로, 시무집사 및 권사 선거는 투표자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.
 - 2. 예산안과 결산안 승인,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 제시한 각종 안건 및 중요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은 투표자수 과반수이상 의 찬성으로 가결한다.
 - 3.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항의 의결은 투표자수 과 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- 4. 원로목사, 원로장로는 공동의회 일반사항의 의결정족수로 한다.
 - 5. 본 교회 정관의 개정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- 6. 소속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 변경은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 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 - 7. 서면으로 결의권을 위임한 교인은 의사정족수와 함께 의결정족 수에도 포함한다.
- 제33조(회의록) ①공동의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공동의회 의장인 당회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당회장실에 보관한다.
 - ②공동의회 회의록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,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이 간서인이 된다.
- 제34조(재정장부열람) ①본 교회 정기공동의회에서 당해연도 결산안 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없으며 단,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.
 - ②당해연도 정기공동의회에서 결산승인 이전의 재정장부 열람은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.

- 제35조(의장의 권한과 직권) ①의장의 가부권은 고유권한이며 이를 침해할 수 없다.
 - ②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고 의장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자연히 부결된다.
 - ③의장은 매 사건에 결정을 공포하며, 특별한 일로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판단에 의하여 비상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.

제 6 장 당회

- 제36조(성격) 본 교회의 당회는 교회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며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교인의 행위를 총찰하는 사법권과 행 정권을 갖는 치리회이며, 권징은 본 교회의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과 장로회헌법 권징조례에 따른다.
- 제37조(조직) 본 교회 당회는 노회에서 위임받은 위임목사와 본 교회 시무장로로 구성하고 위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며, 시무장로는 당회원이 된다. 원로목사와 원로장로는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 (단, 언권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이 없다)
- 제38조(의사정족수) 위임목사 1인과 시무장로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 성수가 된다.
- 제39조(의결정족수) 본 교회 당회의 의결은 제38조 의사정족수에 따라 출석 당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제40조(회집) ①본 교회 당회는 1년 2회 정기당회로 회집하며, 임시 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장로 반수(半數)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,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, 교인의 공동의회 소집청원

- 으로 당회가 결의할 때 당회장이 소집한다.
- ②만일 당회장이 없는 때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으나 이 경우, 일반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.
- 제41조(당회장) ①본 교회를 대표하는 위임(담임)목사가 당회장이 되며, 교회의 모든 사무를 지도 감독한다.
 - ②장로회헌법 정치 제9장 제3조에 준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위임목사가, 그가 속한 노회에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위임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.
 - ③당회장은 본 교회 위임목사만이 되는 것이나, 위임목사가 없는 경우 위임목사 청빙시까지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. 단, 부 득이한 경우 에는 당회장이 될 목사가 없을 지라도(허위교회)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.
- 제42조(임원) ①당회의 서기는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당회 회의록과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한다.
 - ②본 교회 각 위원회와 각 부, 기관의 수지결산을 감사(監査)하기 위해 감사를 두며, 당회장 추천으로 당회원 중 2인 이내의 감사와 감사업무를 돕기 위해 교인 중 3인 이내 전문보조위원을 둘 수 있 다.
- 제43조(당회의 직무와 권한) ①신령적 관계에서의 본 교회 당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여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.
 - 2.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결정한다.
 - 3.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.
 - 4. 교회 목양권과 교리권, 교훈권을 노회로부터 위임받는 위임목

사 청빙을 청원한다.

- 5. 노회총대장로를 파송하며 청원과 청원의 경유권 및 교회 상황을 노회에 보고한다.
- 6. 장로, 집사, 권사의 임직 및 취임을 주관한다.
- 7. 장로회헌법에 규정한 장로, 집사의 권고휴직 및 사직(정치 제13 장 제6조)을 처리한다.
- 8. 부교역자의 임면(任免)과 선교사임용 등 제반사항을 처리한다.
- 9. 제직회 사무를 위하여 서리집사 등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부여 한다.
- 10. 본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와 당회장이 임명하는 제직회(위원회) 및 기관 등 인사를 결의한다.
- 11. 교회헌금의 종류와 그 시기 및 방침을 작정한다.
- 12. 예결산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
- 13. 교회운영지침을 수립(당회장)하여 각 위원회와 기관에 시달한다.
- 14. 교회조직체계 정비와 주요 사역을 조정한다.
- 15. 지도기관 및 위원회, 주일학교, 찬양대, 남·여전도회, 각 기관, 교구·구역의 조직 및 구분 편성을 결의하거나 감독한다.
- 16. 장로회헌법 권징조례, 본 교회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권징을 시행한다.
 - 가. 본 교회 교인이나 타 교회 교인이 본 교회와 위임(담임)목사 와 특정교인을 상대로 송사를 제기하거나, 허위사실을 날조 비방하는 행위, 또는 허위사실을 각 언론과 인터넷 등에 유포 하는 행위가 교회와 위임목사, 관련당사자들의 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경우 당회의 권징재판을 시행하여 교인의 권리 및 교인 지위를 박탈할 수 있으며,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다.
 - 나. 증거가 명백할 경우 견책, 근신, 수찬정지(受餐停止), 정직, 면 직, 제명,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(解罰)한다.

- 다. 본 교회 당회의 권징재판은 성경과 장로회헌법을 따르며, 별 도로 당회권징재판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17. 본 교회 직무와 사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송사와 관련하여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 지출의 대상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.
- ②본 정관에서 위임하는 본 교회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당해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을 공동의회에 제출한다.
 - 2. 공동의회(정기 및 임시)소집을 결의한다.
 - 3. 재산의 취득, 처분, 증여, 매매, 변경, 관리 및 차입, 담보제공 등을 결의한다.
 - 4. 정관의 심의 및 시행세칙, 규정, 규약, 기준, 지침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, 폐기한다.
 - 5. 본 교회 재산관리와 특별목적사업을 위해 법인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, 법인설립을 결정한다.
 - 6. 재무회계관리에 관한 특별사항을 결정한다.
 - 7.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결의한다.
 - 8. 위원회간 예산의 전용과 총예비비의 전용을 승인한다.
 - 9. 각종 회의록의 열람청원 여부를 결정하며, 각종 명부와 교회 직인을 관리 보관한다.
 - 10.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기타 본 정관과 공동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③본 교회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.
 - 1. 본 교회의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의식을 주관한다.
 - 2. 예배(집회)시간과 장소를 정하며 그 시행은 교회주보로 확인한다.
 - 3. 본 교회 부동산을 관리한다.
 - 4.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권리를 제한한다.
 - 5. 본 교회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한다.
 - 6. 자문역, 또는 전문위원을 두어 자문 받을 수 있다.
- ④그 밖의 본 교회 당회의 직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'당

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'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- 제44조(운영위원회) 본 교회는 당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 사법처리(권징재판)는 예외로 한다.
 - 1. 운영위원회는 당회장과 당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.
 - 2. 운영위원회의 정수는 당회원 총수의 과반을 넘지 않으며 운영 위원은 당회장이 지명한다.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 - 3. 운영위원회는 당회가 위임한 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당회장,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, 회의의 목적사항과 시간, 장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나 시급 한 경우에는 유선, 이메일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.
 - 4.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인 당회장과 운영위원 과반수이상 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결의한다.
 - 5. 운영위원회 서기는 처리한 안건을 회록으로 정리 보관하여 그 결과를 당회에 보고하므로 확정한다.
 - 6.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, 직무에 관한 사항은 '당회운영에 관한 시행세칙'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.
- 제45조(지도기관) ①본 교회는 당회 직속의 지도기관으로 기획, 홍보, 선교, 전도, 구제, 교육, 인재양성, 장학, 봉사, 재정, 행정, 법무, 재 산관리 등의 사무를 지도할 국(局)을 설치할 수 있다. 단, 국의 설 치는 당회 결의로 한다.
 - ②각 국의 장(長)은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③지도기관은 교회발전과 목회의 유익을 위해 위원회 사역을 지도하며 위원회와 서로 협력한다.

④지도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등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46조(예결산위원회) 본 교회의 당해 회계연도 결산안과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하여 당회 산하에 예결산위원회를 둔다.

- 1. 구성: 지도기관의 장(長)과 각 위원회 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로 구성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. 단, 당회장은 필요시 별도의 위원 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- 2. 활동기간: 당회의 결의로서 당회장이 9월 첫째 주에 예결산위 원회를 소집하여 예산위원회는 당해연도 11월말까지 활동하며, 결산위원회는 차기연도 1월말까지 활동한다.
- 3. 교회운영기본지침 통보: 당회장은 차기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'교회운영기본지침'을 수립하고 당회 결의를 거쳐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에 시달한다.
- 4. 예산안 제출: 각 위원회의 세부예산내역을 종합하여 예결산위 원회는 단일 예산안을 수립한 뒤 당회에 제출한다.
- 5. 결산보고서 제출: 예결산위원회는 당해 회계연도의 교회 총수 입지출을 망라한 결산보고서를 당회에 제출한다.
- 6. 예결산안 의결: 당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당회 의결과 제직회 보고를 거쳐 12월 중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하며, 결산안은 당 회 의결과 제직회 보고를 거쳐 차기연도 2월 정기공동의회에서 확정하다.
- 7. 의사 및 의결정족수: 예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8. 예결산위원회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회의록으로 기록을 유지하여 정기공동의회에 제출한다.

제47조(회의록) ①당회 서기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당회장과 당회원 전원, 또는 필요에 따라 당회 운영위원의 확인서명(간인)을 받은 후 본 교회 당회장실에 보관한다.

- ②당회록의 열람 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.
- 제48조(명부록) 본 교회 당회가 비치하여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다음과 같다.
 - 1. 교인명부
 - 2. 직원명부
 - 3. 학습교인 명부
 - 4. 입교교인/세례교인 명부
 - 5. 책벌교인 및 해벌교인 명부
 - 6. 별 명부
 - 7. 별세교인 명부
 - 8. 이전교인 명부
 - 9. 본 교회에서 행한 혼인교인 명부
 - 10. 유아세례교인 명부
 - 11. 기타 중요 문서

제 7 장 제 직 회

- 제49조(성격) 본 교회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아 본 교회의 재정을 수 납하고, 본 정관이 위임한 집행을 위한 기구로 제직회를 둔다.
- 50조(조직) ①본 교회 제직회는 장로, 시무집사, 권사로 조직한다. 단,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 및 무임집사, 무임권사, 만70세 이전의 명예권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.
 - ②제직회의 의장은 당회장이 겸무하고, 서기와 회계를 선임하되 재정위원회 서기와 회계가 겸하며 당회장이 임명한다.
 - ③제직회에는 원활한 실무사역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산하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.

- 제51조(회집) ①당회장은 1년에 4회 분기별로 정기제직회를 소집한다. 단, 정기제직회는 재정집행상황을 보고받기 위해 소집하며, 필요시 당회 결의로 임시제직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②제직회의 소집은 당회장이 1주전에 회의의 목적과 시간,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당회장이 판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1주전 공 고를 생략할 수 있다.
 - ③예결산안 보고 및 승인은 당회 의결에 따라 제직회의 경유 없이 공동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52조(협의사항) 본 교회 제직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1.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집행내역
- 2. 당회가 재정에 관해 특별히 요청한 사항
- 제53조(의사정족수) 본 교회 제직회는 출석하는 회원으로 개회하며, 출석하지 않는 회원은 회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한 다.
- 제54조(직무) 본 교회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 - 1. 교회(공동의회)에서 확정한 예산을 관리 집행한다.
 - 2. 선교와 구제, 기타 재정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.
 - 3. 1년간 경과상황과 일반수지결산을 연말공동의회에 보고한다.
 - 4. 기타 당회가 위임하는 재정에 관한 특별안건을 협의한다.
- 제55조(회의록) ①제직회 회의 의사(議事)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 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, 제직회 의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본 교회 당회장실에 보관한다.
 - ②제직회 회의록 열람청원은 당회 결의로 열람여부를 의결한다.

제 8 장 위 원 회

- 제56조(목적) ①본 교회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직회의 집행부서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역하게 한다.
 - ②위원회의 사역은 당회의 직무를 월권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, 각 종 사역에 대하여는 당회 지도기관의 지도와 협력하에 처리할 수 있다.
- 제57조(위원회 사역) ①본 교회는 당회의 결의로서 위원회를 두어 활동하게 하며 위원회의 증감이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회장이 결정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.
 - ②위원회는 당회 지도기관의 산하에 설치하고 지도 감독을 받는다. 지도기관에 소속되는 위원회의 종류는 당회의 결의를 요한다.
 - ③각 위원회는 사역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별로 각 부서와 기관을 둘 수 있다.
 - ④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회의 결의에 의하거나, 별 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58조(위원장) ①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 산하 각 부서·기관의 장과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지도기관의 장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.
 -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회장이 부위원장, 또는 간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제59조(임기) 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특별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.
- 제60조(운영범위) ①본 교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의 각 사항

- 에 대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1. 공동의회에서 확정하고 제직회에서 집행하는 당해회계연도 예 산의 지출계획의 수립 및 추진
- 2. 위원회 편성예산의 집행에 관한 결산
- 3. 위원회 사역의 추진과 결과 보고
- 4. 기타 위원회에 속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- ②위의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신규사역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기관의 장을 거쳐 당회장에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, 추후 당회 의 승인을 받는다.
- 제61조(회의소집 및 회의록) 위원회의 회의소집을 통보할 시에는 회의명,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도기관의 장을 거쳐 당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다.
- 제62조(예결산 보고 및 책임) ①각 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와 당회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도기관의 장 지도하에 각 위원회 위원장이 예산집행 및 결산의 책임을 진다.
 - ②위원회는 분기별로 예산집행결과를 당회에 보고 승인받은 후 제 직회의 보고를 거쳐야 하며, 회기말에 정기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9 장 부속기관

- 제63조(주일학교) ①본 교회 주일학교의 목적과 관할은 다음과 같다.
 - 1. 주일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 님과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 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.
 - 2. 주일학교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하에 두며, 업무는 주일학교

담당위원회가 지원한다.

- ②주일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.
- 1. 주일학교의 교장은 위임(담임)목사가 되며, 교감은 당회원 중에 서 선임한다.
- 2.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.
- 3. 주일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.
 - 가. 영유아부: 3세 미만 취학 전 어린이
 - 나. 유치부: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
 - 다. 유년부: 초등학교 1-3학년까지
 - 라. 초등부: 초등학교 4-6학년까지
 - 마. 중등부: 중학생 연령
 - 바. 고등부: 고등학생 연령
 - 사. 청년부: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전까지
 - 아. 장년부: 결혼 후

제64조(찬양대) 본 교회의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.

- 1. 찬양대는 각 부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 설치 운영한다.
- 2. 찬양대는 당회가 관할 감독하되 담당위원회가 전반적인 실무 운영을 지원한다.
- 3. 찬양대는 각 부별로 대장을 비롯한 임원을 두며, 당회의 결의 를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.
- 제65조(교구 및 구역) 본 교회가 분할 관리하는 교구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.
 - 1. 교인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을 합쳐 교구로 관리하고, 몇 개의 교구를 합쳐 대교구로 분할 관리할 수 있다.
 - 2. 교구의 수와 경계는 교인의 분포,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 결의를 거쳐 당회장이 결정한다.

- 3. 교구에는 교구장과 총무, 총무 산하의 구역장과 권찰을 두며,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.
- 4. 당회장은 교구를 전담하는 담당교역자를 둘 수 있다.
- 5. 교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담당위원회를 둔다.
- 제66조(전도회) ①본 교회는 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봉사와 전도 를 목적으로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두며 전도회 구분은 당회가 정하다.
 - ②전도회는 당회의 관할 및 감독하에 두며, 전도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은 당회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 - 1.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계획
 - 2. 회칙의 제정 및 개정
- 제67조(상담원) ①본 교회 소속 교회 및 외부인을 상대로 올바른 신 앙 성숙과 건전한 가정을 위한 상담활동 등을 위하여 상담원을 둔 다.
 - ②상담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회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.

제 10 장 인 사

- 제68조(인사권) 본 교회 정관에 근거한 직원의 인사권은 당회장에게 있으며 인사와 관련하여 당회의 승인을 받는다.
- 제69조(인사범위) 본 교회의 인사는 명예권사,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구성원, 그리고 교역자 및 유급 사무직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.
- 제70조(실행) 본 교회의 교역자와 사무직원 인사 및 임명직의 실행은

새로운 회기 시작전에 시행하며, 단 특별한 경우 당회장이 발표시 기를 조정할 수 있다.

- 제71조(임기) ①본 교회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임(담임) 목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계속시무할 수 있다.
 - ②선출직을 제외한 제직 등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 - ③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임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제72조(심의) 당회장은 인사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 히 검토한 후 적재적소에 임명하도록 한다.
- 제73조(순종) ①본 교회는 직분자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 해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.
 - ②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분을 감당키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.
- 제74조(부교역자) 본 교회의 부교역자 직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.
 - 1. 부교역자는 위임(담임)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, 강도사, 전도사, 협동목사를 칭한다.
 - 2. 부교역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인준하고 청빙하되 시무의 계속여부는 당회장의 천거와 당회 결의에 따른다.
 - 3.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.
 - 4. 청빙해야할 부교역자 수와 직급, 성별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.
- 제75조(선교사) 본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, 임용조 건, 자격, 직무, 임기, 파송, 지원 등의 제반사항은 당회의 결의로

하다.

- 제76조(사무직원) ①본 교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하되, 직원은 교인이어야 하며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면 자동 퇴직으로 간주한다.
 - 1. 사무국장: 본 교회의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채용할 수 있다. 사무국장은 당회장의 천거로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.
 - 2. 사무직원: 경리, 행정직원, 관리직원, 운전기사 등을 사무행정직 원으로 두며 위임(담임)목사가 채용한다.
 - 3. 임시직원: 야간당직자, 환경미화담당 직원을 두며 위임목사가 채용하되, 사무국장이 천거할 수 있다.
 - ②유급직원의 자격, 임용, 보수, 정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정한다.

제 11 장 재 산

- 제77조(교회재산) 본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 종헌금과 연보,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교인들의 총유(總有)로 한다.
- 제78조(재산권) 본 교회는 교회가 소유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워칙을 둔다.
 - 1. 본 교회의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의 소유로 등 기하여야 하며, 등기상의 대표자는 당회장(담임목사)으로 한다.
 - 2. 본 교회 재산의 취득과 처분, 관리 및 보존은 본 정관에 따라 당회에 위임하며, 이와 관련된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는 교회대 표자인 당회장에게 위임하되, 당회 결의로 이를 대행할 수 있

다

- 3.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본 교회 재산의 대표권자가 될 수 없다.
- 4. 지교회 분립은 장로회헌법 규정(정치 제10장제6조5항)에 준한다.
- 5. 어떤 경우에서든 교회분립과 분열로 인한 재산분할은 불가하다.
- 6. 당회의 결의로 퇴회된 교인은 교인지위가 상실되어 교회재산권 (관리 및 처분, 사용·수익권)이 없다.

제 12 장 재정

- 제79조(회계연도)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다음 해 11월30일까지로 한다.
- 제80조(범위) ①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교인의 일반헌금과 특별헌금,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되,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.
 - ②본 교회의 추경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예결산위원회의 심의와 당회 결의를 거쳐 공동의회의 승인을 받는다.
- 제81조(예산의 전용) ①본 교회 각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 항목간 전용이 필요한 사항은 당회장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당회 지도기관 장의 전결에 의해 위원장이 시행한다. 단, 항목간 전용예산 집행내역은 분기별로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며, 전용 후 예산집행결과는 정기공동의회에 보고한다.
 - ②공동의회에서 확정된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추가로 항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 - ③위원회간 예산의 전용과 총예비비의 전용은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각 위원회의 결재문서로 시행하며, 이 경우에도 공동의회에서 인준

한 당해 회계연도 총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총예비비 전용에 의한 예산집행결과는 분기별 정기제직회에 보고해야 하며, 회계연도 결산안에 포함하여 공동의회 승인을 받아야한다.

제82조(재정의 원칙) 본 교회 재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- 1. 본 교회의 재정은 적법성, 절차의 정당성, 공지성 등 세 가지 원칙하에 시행한다.
- 2. 본 교회의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며, 당회 결의로 임명되는 재정위원장이 재정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종합 관리한다.
- 3. 본 교회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위해 내부감사를 의무적으로 연 2회(상하반기)시행하며 필요에 따라 당회 결의로 외부회계기관 에 재정감사를 의뢰한다.
- 4. 재정위원회는 재정(헌금포함)운용계획, 회계서류관리, 교인헌금 및 기타 수입관리, 분기별 재정결산, 금융기관 거래(예적금, 기 타 적립금, 대출, 상환 등)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5. 재정위원장은 수입 및 지출내역, 교회 재정잔고현황 등을 매주일마다 결산하여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6. 본 교회 교인의 개인별 헌금내역 정리는 개인의 연말정산을 위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제3자에 공개가 불가하며 특별한 경우, 본인의 헌금내역 조회는 당회장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.
- 7. 본 교회의 회계서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하되 보존연한이 경과 한 회계서류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폐기하며, 이와 관련한 세 부사항은 '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'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83조(회계구분) 본 교회의 회계구분은 다음과 같다.

1. 본 교회의 재정은 경상예산을 처리하는 일반회계와 교회의 특 정한 수입·지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 처리 하는 특별회계로 한다.

- 2.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헌금 및 기타 수입을 관리하여 집행한다.
- 3. 특별한 경우의 특수목적헌금은 당회의 결정으로 시행한다.
- 4.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일정기 간을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.
- 5. 본 교회 교육관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별도의 교육관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84조(재정지출) 본 교회의 회계처리 및 재정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.

- 1. 공동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근거가 있어야 하며, 각 위원회의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공동의회가 인준한 총예비비 범위 안에서 당회의 결의로서 전용하여 집행한다.
- 2. 각 위원회는 예산 확보, 예산 집행, 예산 결산을 책임지며, 당해연도 위원회별 항목별 세부예산에 대해 지도기관 장의 결재 문서에 의하여 지출결의를 거쳐 위원장의 책임하에 집행한다.
- 3. 전항의 재정지출 책임범위는 '교회위임전결규정'에 준한다.
- 4. 교직원 사례비, 월정액 경비, 보수, 임대료, 납부고지서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해당위원장의 전결로 집행하되 지출결의에 의한 다. 이 경우에도 사전에 연간지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5. 본 교회의 직무와 사역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송과 관련 하여 그 법무비용 또는 관련비용에 대해 필요시 당회의 결의 로 대상과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지출할 수 있다.
- 6. 본 교회 및 상회(노회, 총회)와 교계 등 대내외 애경사, 특별구 제와 기타 대내외기관 지원 등에 따르는 지출은 교회관련법규 에 의하여 해당위원회 청구에 의해 집행한다.
- 7. 위원회별 재정의 집행은 분기별로 결산하여 정기제직회에 보고하며, 회계연도 연말결산안은 해마다 소집되는 예결산위원

회를 거쳐 당회의 결의로 승인하고 정기공동의회의 인준을 받는다.

- 8.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2월1일부터 차기연도 예산안이 공동의 회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재정지출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.
- 9. 그 밖의 교회 재정위원회의 직무와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은 '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'에 따른다.
- 제85조(기장) ①본 교회의 회계는 2012회계연도에는 복식부기를, 2013회계연도부터 단식부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당회의 결정으로 추후에 적절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.
 - ②특별회계(수익사업)는 복식부기로 기장하며, 본 정관 제7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결산일은 당해연도말로 한다.
- 제86조(헌금관리) 본 교회의 매주 수납하는 헌금은 재정위원회가 집 계를 마친 후 익일(금융기관 영업일)까지 거래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.
- 제87조(지출증빙) 본 교회의 재정지출은 영수증,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며, 증빙이 곤란한 불가피한 특수사역에 필요한 지출은 지급확인증으로 갈음하거나, 지급처를 담당위원회가 별도로 기록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88조(교육) ①헌금은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 일반헌금과 목적헌금으로 구분하며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.
 - ②당회장은 바른 헌금생활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.
- 제89조(관리의무)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

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교인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 13 장 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예우

- 제90조(교역자 시무기간) 본 교회의 위임(담임)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- 1. 위임목사: 위임목사는 만70세까지 시무한다. 단, 시무연한의 변경은 소속교단의 결의에 따른다.
 - 2. 임시목사: 임시목사의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.
 - 3. 부목사: 부목사는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하며,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.
 - 4. 강도사로 시무 중 부목사로 임직할 경우: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, 계속 시무도 이에 준한다.
 - 5. 전도사로 시무 중 강도사로 인허될 경우: 당회장의 천거에 의 하여 당회의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,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.
 - 6. 전도사: 당회장의 천거에 의하여 당회 결의로 1년간 시무할 수 있으며, 계속시무도 이에 준한다.
- 제91조(관리 및 사무직원) 본 교회의 사무직원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당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.
- 제92조(예우) ①본 교회의 교역자 및 직원의 예우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 - 1. 교역자와 사무국장, 유급직원은 교회 재정형편에 따라 사례한다.
 - 2.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사역, 또는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를

지급할 수 있다.

- 3. 위임(담임)목사와 부교역자, 직원에게는 휴양을 위하여 매년 일 정기간 휴양을 할 수 있으며 휴양비, 또는 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4. 위임(담임)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(안식년)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, 연구 또는 휴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기간 과 그 밖의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. 단 안식년을 갖지 못할 경우 해당기간만큼 안식월을 가질 수 있다.
- 5.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편의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.
- ②본 교회의 교역자·직원 사례를 비롯하여 위임목사와 공동사역 자인 위임목사사모, 부교역자, 직원들의 복지후생과 퇴직금, 위로금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, 기준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한다.
- ③그 밖의 예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회가 별도의 교직원 예우규정을 제정하거나, 사무국 시행세칙에서 정할 수 있다.
- 제93조(은급비) ①장로회 헌법(정치편 제4장제4조4호)에 근거하여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에게 주어지는 원로목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교회개척 후 시무한 지 20년이 넘는 본 교회 위임(담임) 목사에게는 시무종료, 또는 은퇴 후에 생활비 보조를 위한 월은급 비를 장로회헌법과 본 교회운영정관, 본 교회 재무회계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.
 - ②은급비 지급대상인 위임(담임)목사의 월은급비 지급과 관련하여 위임목사의 시무연한 종료이전이라도 월은급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.
 - ③월은급비 준비금 적립 금융상품의 지정 및 지출행위는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 승인을 거쳐 재정위원회가 담당한다.
 - ④전항의 금융상품 명의는 위임(담임)목사로 하며, 불가피한 지급사

유가 발생할 시 등 어떤 경우에라도 월은급비를 위한 준비금의 불입액과 이자 및 수익금은 위임(담임)목사에게 지급한다.

⑤위임(담임)목사의 월은급비 준비금 적립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교회 '재무회계처리에 관한 시행세칙' 규정을 따른다.

제 14 장 회계감사

- 제94조(정기감사) ①본 교회의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매년 2회(6 월, 12월)정기 재정감사를 받는다.
 - ②감사는 재정감사결과를 당회 의결 후 공동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. 단, 감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는 사전에 당회장에 보고한다.
- 제95조(수시감사 및 지도) ①본 교회 감사(監事)는 필요시 수시 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.
 - ②재정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제96조(감사결과 통보) ①본 교회 각 위원회와 부속기관은 감사의 재정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.
 - ②감사는 재정감사 중에 취득한 교회 및 개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.
- 제97조(외부회계감사) ①본 교회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회의 결의로서 외부회계전문기관에 '합의된 절차수행' 또는 '재정감사'를 의뢰할 수 있다.
 - ②외부용역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당회에 제출하며 공동의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

제 15 장 부칙

- 제98조(보칙) ①본 정관에 미비된 것은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(합동)헌법에 의하여 공동의회 결의에 따르며 위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본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로 시행하되 당회에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- ②본 교회가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를 위한 공문서 및 재정장부와 관련한 모든 서류의 보존연한은 3년으로 한다.
 - ③본 정관의 간서인은 당회장(공동의회 의장)과 당회 서기(공동의회 서기)로 하되 교회직인을 포함하며, 당회의 결의로 공증을 할수 있다.
- 제99조(정관의 개정) 본 교회 정관 개정은 재적 당회원 3분의 2이상 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발의와 재적교인 중 공동의 회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. 단, 서면위임은 출석한 것으로 하며,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.
- 제100조(경과조치) ①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 앙교회가 시행(교회운영정관 및 시행세칙 등 관련교회법규,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 등에 근거)해온 제반직무와 사역, 교회소유부동 산 20,391㎡(분당구 서현동 산 59-1, 산 59-2, 산59-3, 산 60, 43-2, 44-2/4, 41)의 사회기부결의 및 후속조치, 재정집행, 재산 처리 등은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.
 - ②본 정관 시행 이전에 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에서 제93 조(은급비)와 관련하여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인준을 거쳐 시행된 위임(담임)목사의 월은급비 준비금 적립에 관하여 취하여진 제반 행정처리 및 결정들은 본 개정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101조(시행일) 본 교회운영정관은 정기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 당회 장(공동의회 의장)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숭 인 연 혁>

- 1. 1995년 11월 24일 교회운영정관(안)을 당회가 결정하다.
- 2. 1995년 12월 03일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.
- 3. 2009년 01월 19일 개정 교회운영정관(안)을 당회가 결정하다.
- 4. 2009년 02월 01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.
- 5. 2012년 06월 30일 개정 교회운영정관(안)을 당회가 결정하다.
- 6. 2012년 07월 01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.
- 7. 2014년 02월 02일 개정 교회운영정관(안)을 당회가 결정하다.
- 8. 2014년 02월 09일 개정 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.
- 9. 2015년 02월 08일 개정 교회운영정관(안)을 당회가 결정하다.
- 10. 2015년 02월 15일 개정교회운영정관을 공동의회에서 승인하다.

2015년 2월 15일

대한예수교장로회 분당중앙교회

공동의회 의장 최종천 목사 (인)

공동의회 서기 이송배 장로 (인)

주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효자길 39